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31 대통령령 제1876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의료사업 : 병상수 30개이상
-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6.19]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 (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파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파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 가. 궤도사업
 -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

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 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6조 (계리방법)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

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채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인도·대체 또는 폐기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양도·상각 또는 소멸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

권·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지급 및 대체가 있는 날 또는 채권·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정의 구분)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수리·가공·구입·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제12조 (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 (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기타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제14조 (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의2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용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16조 (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 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 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 (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1조 (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6.19>

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신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금융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1.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지정금융기관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제27조 (지정금융기관의 출납사무취급)

①지정금융기관은 납입통지서와 기타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③지정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지정금융기관은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개설된 당해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④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외의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 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지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①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등) ①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

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및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립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개정 2002.6.19>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 5백만원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① 관리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 관계장부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1. 수익비용명세서
 2. 고정자산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의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7조 (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 (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당해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

해건설개량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자산의 평가)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평가는 이 법을 새로 적용할 때의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와 지방직영기업의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재평가로 구분하되, 그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삭제 〈2002.6.19〉

제44조 (경영공시등)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 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5조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사·지방공단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6.19, 2005.3.31>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2.6.19>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2.6.19>

제47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개정 2005.3.31>) 공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법인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내
2.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

[본조신설 2002.6.19]

제48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 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 (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 다.

제51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의 신청) ①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

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주식인수·현물출자·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 (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56조의3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19]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 [전문개정 2005.3.31]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65조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내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7조,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제67조 (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신설 2002.6.19>

제67조의2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67조의3 (상한보증범위) 법 제77조의5 후단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2.6.19]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 (경영평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③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 종료후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2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기관의 지정
4.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의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69조 (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정·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2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 ①

법 제7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이하 “경영진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경영진단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사항
2. 경영진단지표에 관한 사항
3. 경영진단반이 제출한 경영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진단제도 발전등에 관한 사항

③경영진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경영진단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경영진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과장이 된다.

⑥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 (회의) ①경영진단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진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4조 (의견청취) 경영진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76조 (경영지도법인) ①법 제7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은 회장(원장 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②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회장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선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7조 삭제 <2002.6.19>

제78조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 4의2.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설립사항 및 추가출자·출연사항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6.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부칙 <제16213호, 1999.3.31>

①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연자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이 영의 개정으로 계정 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영의 계정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입비는 이를 창업비로 표시한다.

③(경영지도법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29호, 2002.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 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 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2호, 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